

<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안내>

안녕하십니까? 2016년 4월 1일부터는

[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]과 [운행기록작성]을 하여야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(차량감가상각비,리스비용,렌트비,주유비,보험료,자동차세,수리비 등)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리고,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 됩니다

연번	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가입	운행기록작성	비용인정여부(승용차1대당)
1	○	○	대부분 인정. 다만, 감가상각비등은 최대 연 800만원까지만 가능.
2	○	×	최대 연 1,000만원까지만 가능.
3	×	○	전액 불인정.
4	×	×	전액 불인정.

※ 기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보험만기에 갱신할 때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.

◆ 업무용 승용차 관련

1)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

- ※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승용차에 적용합니다. (경차, 승합차,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적용 제외)
- ※ 업무용 사용범위 : 사업장방문, 거렛치밋대리점 방문, 회의참석, 판촉활동, 출퇴근, 기타업무사용목적
- ※ 승용차 관련비용 : 감가상각비, 리스료, 유류비, 보험료, 수리비, 자동차세, 통행료 등 취득,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

2) [법인]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계산방법

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(○)		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(×)
운행기록 작성 (○)	운행기록 작성 (×)	전액 불인정
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× 업무 사용비율	Min(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, 1천만원)	

※ 16년도의 경우 2016. 4.1.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

※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연간 비용 인정 (업무사용비율 : 업무사용거리 / 총 사용거리)

3)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계산

Min(감가상각비(상당액) ×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, 8백만원)

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	
1천만원 초과	1천만원 이하
1천만원 ÷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	100%

4) 운행기록의 작성 방법

승용차별로 각각 작성, 비치하여야 합니다. 2016년의 경우에는 2016.4.1. 부터 작성(2016. 4. 1.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)
--

※작성방법 : 사용자, 사용목적, 출발, 도착, 주행거리, 업무용주행거리를 기록하여야 합니다.

(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엑셀서식은 당사에 요청하시면 메일로 개별 전송해드립니다.)